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한국과 유사한 공공부조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일본의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하고 생활근공자 자립지원 제도 등 일본의 비수급빈곤층 지원 제도의 현황 및 방향성 파악하여 관련 정책 합의 도출

□ 과제명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기초 연구

□ 출장기간

- 2024.11.04.(월) ~ 2024.11.08.(금)

□ 출장국가(도시)

- 일본(오사카, 동경)

□ 출장자

- 임완섭 연구위원, 이주미 부연구위원, 최준영 전문연구위원
- 이지연 사무관, 오초롱 주무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11/4(월)	일본 오사카	오사카공립대학	고이시 노리미치 교수	- 일본 빈곤문제 및 제도 (생활보호제도,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전문가 면담
11/5(화)	일본 오사카	오사카변호사연합회	쓰게 나오야 변호사 등	- 일본 변호사연합회(오사카 변호사회) 방문 및 제도 관련 전문가 면담

				- 생활보호법 개정 및 제도개편 과정 및 이후 방향성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대학	시즈메마사토 교수, 최옥금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 일본 노인빈곤 및 생활보호제도 개선 방향, 생활보호제도와 연금제도와와의 관계 등 개편 방향 관련 전문가 면담
11/6(수)	일본 오사카/도쿄	이동	출장 연구진	- 이동 및 출장내용 중간점검
11/7(목)	일본 동경	다이토구 복지사무소	하나지마 히로미치 계장 등	- 생활보호수급자 지자체 차원의 특성 및 지역 간 차이, 제도 사각지대 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등 질의 및 면담
11/8(금)	일본 동경	넷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상석연구원 (넷세이기초연구소) 아베아야 교수 (동경도립대학)	- 적정성 평가, 표준가구, MIS, 제도개편 등 -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MIS(최저소득기준) 방법에 의한 최저생활비 계측, 생활보호제도 검증 및 평가방식 관련 전문가 면담

①	일본 빈곤문제 및 제도(생활보호제도,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전문가 면담
일 시	11월 4일(월) 오후 4시
장 소	오사카 시내
참석자	원외 - 고이시 노리미치(오사카공립대학 교수) 원내 - 임완섭, 이주미, 최준영
<p>1)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대상자는 대체로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인지(선정기준 특성 등) 또한 대상자의 특성은 무엇인지</p> <p><선정기준 관련></p> <p>□ 기본 이념 및 정의의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는 입단 단계에서는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고립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지만, 2014년 법 제정에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법률상의 정의에는 경제적 곤궁만 들어가게 됨. ○ 2018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생활곤궁자의 자립지원의 기본 이념 및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곤궁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1) 생활곤궁자의 존엄 유지 2) 취업의 상황, 심신의 상황,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같은 생활곤궁자의 상황에 응한 포괄적이고 조기적인 지원 3) 지역에 있어서의 관계 기관,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제휴 등 지원체계의 정비(생활곤궁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 만들기) 등 기본 이념의 명확화를 시도함 - 정의 규정을 '생활곤궁자란, 취업 상황, 심신상황, 지역사회의 관계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해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재검토 함 - 이러한 기본 이념의 명확화와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생활곤궁자 지원에 종사하는 다수 및 다른 분야에 걸친 관계자 간에 기본 이념이나 정의의 공유를 도모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하고자 함 ○ 그러나 여전히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음. 정의에 경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히키코모리도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대학원생과 같은 고학력자들도 많음.

- 부모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도 히키코모리로 생활곤궁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곤궁자를 경제적으로만 정의하면 안된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있음
- 해당 제도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등 보다 폭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향)

□ '주거확보급부금'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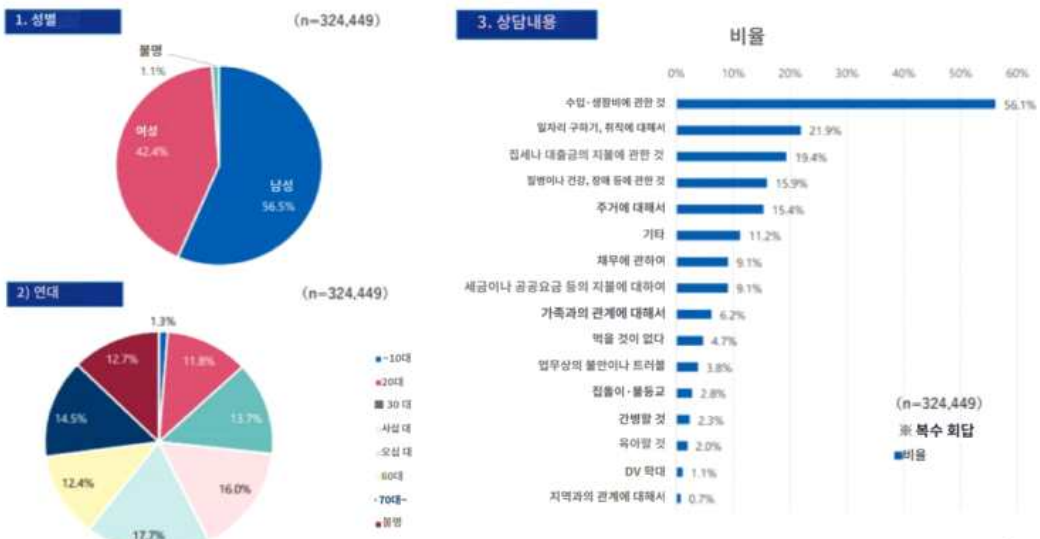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에서 금전적 지원이 지급되는 유일한 사업이며, 그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생계 유지자가 ① 이직·폐업 후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② 개인의 책임·사정에 관계 없이 급여 등을 얻을 기회가 이직·폐업과 같은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는 경우
- 최근 달의 세대 수입 합계액이 시정촌 민세의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액수의 1/12 (이하 「기준액」)와 집세(단, 상한 있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 현재의 세대의 예·저금 합계액이 각 시읍면에서 정하는 액수(기준액의 6월분. 단, 100만엔을 넘지 않는 액수)를 넘지 않은 것
- 구직 활동 요건으로서 헬로워크 등에 구직의 신청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헬로워크에의 구직 신청, 직업 상담(월 2회 이상), ② 기업 등에의 응모(주 1회 이상)가 요구됨

※ 다만, 자영업자의 분에 대해서는 헬로워크 등에의 구직의 신청에 대신해 사업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지원 대상의 특성

- 매년 발표되는 통계는 없으며, 2022년 자료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 생활곤궁자 자립상담 지원사업 실시 상황(신규상담자 특성)



자료: 생활공공자 자립지원 통계시스템에서 추출(2022년); 고이시 노이마치 교수 제공 자료 재인용

□ 지원 대상의 변화

○ 신규상담건수는 2020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이후 대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지원 대상자수와 소득증가자(증수자)는 2021년까지증가하다 2022년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취로자(취업자)는 2020년대 들어와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취로증수율[(취로자수 + 증수자수)/취업지원대상자수]이 2020년 들어서 그 이전보다 크게 감소함

※ h27은 헤이세이 27년으로 2015년을 의미, R4는 레이와 4년으로 2022년을 의미함.

지원 상황 조사 집계 결과(H27.4~R5.3)											
연도	신규상담접수건수		계획 작성 건수		취업 지원 대상자 수		취로자수	증수자수		취로·증수율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취업 지원 대상 명(백만명당)	증수자 명(백만명당)	취로·증수율 =(2+3)/3		
H27	226,411	14.7	55,570	3.6	28,207	1.8	21,465	-	6,946	-	-
H28	222,426	14.5	66,892	4.3	31,970	2.1	25,588	17,836	7,199	4,878	71%
H29	229,685	14.9	71,293	4.6	31,912	2.1	25,332	17,958	6,390	4,414	70%
H30	237,665	15.5	77,265	5.0	33,969	2.2	25,001	16,333	9,031	5,079	63%
R 1	248,398	16.2	79,429	5.2	35,431	2.3	25,212	16,717	8,650	4,890	61%
R 2	786,163	51.4	139,060	9.1	76,100	5.0	20,659	14,502	11,902	5,924	27%
R 3	555,779	36.6	146,719	9.7	79,365	5.2	23,100	17,633	18,052	9,887	35%
R 4	353,095	23.4	100,457	6.6	57,720	3.8	21,286	16,619	13,783	8,376	43%
누계	2,859,622	-	736,685	-	374,674	-	187,643	117,598	81,953	43,448	-

자료: <https://www.mhlw.go.jp/content/001310707.pdf>에서 24.11.19인출

□ 신규 상담자 문제와 특성

- 생활곤궁자 자립상담 지원에서 신규상담자의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적 곤란(53.0%), 주거불안정(13.6%), 취업활동 곤란(13.4%), 가정(13.3%), 가족관계 및 가정 내 문제(10.4%), 정신건강(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경제적 곤란이 가장 높은 비중이지만 다양한 문제와 특성을 보임
- 경제적인 문제, 주택, 일자리, 신체건강, 가족관계(문제), 재정관리, 정신건강, 다중채무, 노숙인(홈리스) 등 중복적인 성격의 문제가 많음
- 신규 상담자의 다른 제도나 전문기관의 연결을 살펴보면, 복지사무소(생활보호 담당부서)가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협의회(생활복지자금), 식량지원 관계단체(푸드뱅크 등)의 순으로 많음

2)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중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지자체간 차이 등

-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의 격차) 필수사업은 100% 실시, 임의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도 여전히 많음
 - 지자체에 격차가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후생노동성에서는 임의사업을 필수화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음. 지원 메뉴의 다양화를 할 수 없는 지자체가 많기는 함



자료: <https://www.mhlw.go.jp/content/001225625.pdf>

-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일과 겸무하는 경우도 있음. 인건비 부족으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예산 지원을 받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함
 -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실시기관은 도도부현, 시정촌 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2/3 국고지원, 1/3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
 - 제도가 시작했을 때는 생활보호수급자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후생노동성 쪽에서는 생활보호상담에 오면 그 사람을 생활곤궁자제도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제도명 자체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라, 현금급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생활이 어떤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도록 하려 했으나, 곤궁자라는 제도명으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일부 임의사업(가계개선지원사업, 취업준비지원사업 등)의 경우, 필수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재무성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생활보호제도 수급자와 생활곤궁자립지원제도 대상자에 대한 헬로워크와 지역취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관계

○ '직업안정법'의 개정

-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과 확연히 다른 공적인 입장에서 무료직업소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 및 기타 각종 규제를 완화
- 주요 개정내용: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과는 명확히 다른 공개적인 입장에서 무료직업개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 그 밖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사정에 맞는 창의적 궁리를 통해 무료직업개호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 '고용대책법'의 개정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대책협정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요청을 법정화
- 주요 개정내용: 국가와 지자체 잇따라 고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고용대책협정, 국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적 실시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연계를 강화함. 단체장이 직업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정함

○ 헬로워크 (2018년 직업안정법 개정)

- 원래 있었던 것인데 헬로워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민영화 등의 쟁점이 있었으나, 후생노동성에서 선호하지 않으므로(지방분권 및 민영화 거부)이 개정을 하였음

- 개정을 하였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
-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헬로워크 컴퓨터를 가지고 구직을 하는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음. 헬로워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4) 현 생활보호제도 수준균형방식의 적용 방식

- 생활보호기준부회를 통한 학자들의 토론을 거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후생노동성이 결정
-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생활비가 어떤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최저 분위(1분위) 기준의 생활비 = 고령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등 생활비가 많은지 여부를 비교해서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생활부조기준액 설정방법 관련
 - 후생노동성의 의견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그렇다고 물가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지는 않음. 즉, 디스플레이션만 반영하는 것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음

□ 기타

- 생활곤궁자지원제도 문제점
 - 현금급여가 별로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음
 - 현금지원이 없는데 자립하라는 것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 단계적 프로그램 이행을 지향하지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으며,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음
- (대안) 생활곤궁자지원제도는 이대로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법 등을 결합하는 방식의 검토 필요
 - 사회복지법은 2020년 개정되었으며, 고령자, 아동, 장애인, 생활곤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각각의 지원법보다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
 - 고령자지원법, 장애인종합지원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정 및 실효는 어려움
- 생활보호를 탈피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사망'이며,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함
 -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됨

②	일본변호사 연합회의 생활보호제도 관련 활동과 관련 시사점
일 시	11월 5일(화) 오전 9:30
장 소	오사카(일본변호사연합회)
참석자	원외 - 쓰게나오야, 모리히로노리 변호사(아이치현변호사회), 고쿠보테쓰로 변호사(오사카변호사회), 비토히로키 변호사(교토변호사회) 원내 - 임완섭, 이주미, 최준영
<p>1) 일본 변호사연합회 개요: 협회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주요 활동(생활보호제도 개선 등 정책 개선 활동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중반 일본 변호사 연합회 활동이 활발하게 된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처음 빈곤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첫 심포지엄 개최 - 2006년 빈곤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첫 심포지엄은 일본 전체를 두고 처음이라고 한 것이며, 오사카는 아이린 지구 노숙인 문제가 심각(전국적으로도 심각)하여 전국적인 변호사연합회 대응과 별개로 1997년부터 대응하고 있었음 • 1970년대까지는 생활보호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없었으며, 1980년대부터 법률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음. 1990년대 경험이 있는 변호사 증가로 생활보호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생겨났다고 보면 될 거 같음(초기에는 변호사연합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 시작) ○ Q) 변호사협회(전국 52개 변호사협회) 중, 지역성 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함. 예를 들어 관서지방 변호사들의 적극성이 큰 것인지 모든 변호사협회가 비슷한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마다 빈곤문제 대책 위원회가 유무가 차이가 있고, 지역적 온도차는 있을 수 있음 - 관서지방이 빈곤문제 변호사 분들의 역사적 유래가 깊은 편임 <p>2) 일본 변호사연합회 생활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 생활보호법 개정 등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운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부적 성과를 이루거나 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 생활보호기준 인하 반대 및 유지 - 2008년 : 모자가산(母子加算) 부활 - 2010년 : 통원(通院)이송비(구급차 이송비) 부지급통지 철회 	

- 2008년 4월 이전에 조폭구성원이었던 수급자가 다액의 통원이송비를 부정수급하고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통원이송비를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않는 후생노동성 통지가 시행됨
 - 2010년 3월 상기 통지 완전 철회
 - 2021년 :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조회의 일부 시정
- 3) 일본 변호사연합회 생각하는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성과와 문제점
- (생활보호제도) 현재 생활보호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안전망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1) 생활보호제도 이용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커버리지의 문제)
 - 2) 생활보호 이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보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급여 적정성의 문제)
 - Q) 생활보호제도 수급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가 있어서 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선정기준 엄격성으로 수급률이 줄어든 것이며, 개그맨 수급자 때리기 전략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수급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프레임으로 씌워서 한국과는 그 문제 인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체적인 수급률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근로무능력자(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수급률을 증가하였음
 - 노인 연령을 세분화하여 그 연령 기준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음
 -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기준과 그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변호사연합회의 대응이 쟁점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생활보호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방향성
 - 1) 현행 「생활보호법」을 권리성을 강화하는 내실을 갖춘 「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는 것
 - 2)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후생노동성 고시 등을 개정하는 것
 - i) 적어도 최저생계비 6개월 분 정도의 예·적금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 고시를 개정할 것
 - ii) 처분가치가 적은 자동차의 보유 및 사용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
 - iii) 부양조회는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후생노동성 통지를 개정하는 것

- iv) 생활보호이용가구 자녀의 대학교 등 진학을 인정하도록 후생노동성 고시를 개정하는 것.
 - v) 생활보호기준의 추가 인하를 중단할 것
 - vi) 지금 해야 할 일은 생활보호기준의 인상과 「하계(夏季) 가산」 신설
- 3) 지방정부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선진적인 실천을 지자체 간에 확산시켜 「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

○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성과와 문제점

- 각 지역의 변호사회와 자립상담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원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지거나 중층적 지원체제가 구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럼에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i)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임의사업(취업준비지원사업, 일시생활 지원사업, 가계상담지원사업, 아동학습지원사업)을 모두 필수사업으로 전환하고, 각 사업의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광역적 연계를 추진해야 함
- ii) 자립상담지원사업에서는 주민의 생존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생활보호부문, 공채권징수부문 및 공공주택부문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활곤궁자 발굴 및 지원창구로의 유도를 위한 노력
- iii)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법률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
- iv)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취업·공적훈련을 창출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취업훈련 등 실시
- v) 주거확보급부 및 일시생활지원사업을 보편적인 거주지원사업으로 재편하여 세심한 지원체계를 구축
- vi)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계상담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수요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vii)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Q)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맞는지? 맞다면, ‘생활보호제도’와 병행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제도로 생각하는지?

- 상담창구에 있는 변호사 창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열심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자립지원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활용할 수 있는 급부와 연계 등의 한계는 있을 수 있음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에 관한 오사카변호사회의 활동

- (1) 생활곤궁자 법률상담사업 : 오사카변호사회는 지자체의 생활곤궁자 자립상담창구와 연계된 법률상담사업을 하는 것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개선에 대처해왔음
 - 각 지자체에 2~3 명의 담당변호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지자체 직원과의 신뢰관계와 연계속에서 케이스워크로서의 법적지원을 하는 것(변호사가 상주하여 소셜워커와 연계하여 협업을 하고 있음)
- 상담건수 및 내용
 - 상담건수(정례 및 수시는 연간 약 1,500건정도이고 상담내용은 압도적으로 부채문제가 많고 (70~80%, 이혼 등의 가족문제, 집세 체납 등의 주택문제, 노동문제, 생활보호문제 등이었음

5) 생활보호제도 선정과 급여 지급의 측면에서 자동차 보유, 고령자 보호기준의 하향 등에 문제에 대한 방향성

○ ※ 생활보호기준에 있어서는 7 의 생활보장법안을 참조

- 일본에서는 등록 10년 정도 이상의 자동차는 처분가치가 0인 경우도 많음에도, ①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통원하는 경우, ②생업용, ③ 교통불편자·심야금주의 통근용 등 극히 한정적인 경우이외는 보유도 이용(차용)도 금지되고 있음 → 이것이 특히 지방에서의 생활보호이용의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방향성

- 1) 처분가치가 작은 생활용품으로서의 자동차(예를 들어, 당해 가구의 최저생활비의 6개월 가량까지 등) 변제 중의 경우도 포함해 당해지역에서 70% 정도의 보급률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보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출하는 것
- 2) 보유를 인정한 자동차의 이용을 보유 목적에 한정한다는 2022년 5월 10일자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보호과 시무연락을 철회해 보유용인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상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
- 3) 생활보호이용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있어서는 최저한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생활보호의 일시부조로서 급부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

○ Q) 자동차 보유 기준이 생활보호제도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소송의 이슈 중 하나인 것인지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자동차 보유 자체만으로도 생활보호 대상이 안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생활보호 대상이 안됨
- 예외사항으로는 장애인의 통원 목적(휠체어가 있는)으로만 허용되며, 이마저도 2000cc 미만만 허용하고 있음

- 자동차를 자산의 의미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타는 것 자체에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빌리는 것도 안된다는 인식이 강함

6)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

- 사회참여 등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필요한 수요를 쌓고,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검증 방식에 의한 것임
- 구체적으로는 제1분위와 10분위층과의 비교를 통한 검증 자체를 폐지하고,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생활보호기준위원회에서도 검토 되어 온 MIS 방식(속성이 가까운 일반시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여러차례 논의하여 선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등의 새로운 검증수법의 개발을 강구하는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생활보호기준 검증수법의 개발 등과 특이적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활보호기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회장 성명」(일변런 2023년 2월 9일)

7)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제안한 「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 앞선 Q4. 대안 중, 1) 현행 「생활보호법」을 권리성을 강화하는 내실을 갖춘 「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연결하여서 살펴보면,
 - i) 「생활보호법」을 「생활보장법」, 「피보호자」를 「이용자」, 「부조」를 「급부」로 하는 등 법률에서 권리성을 명확히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것
 - ii)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편견과 복지사무소 창구에서의 불법·부당한 「水際作戰(상담창구에서 거부하는 뒤편을 비추는 것)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보호 이용이 인권이라는 점과 제도내용을 알기 쉽게 알리고 홍보할 의무, 이용자에게 절차 등을 알려주고 도와줄 의무, 수급률을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의무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것
 - iii) 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행정직원의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자격과 담당 가구수의 상한을 법률로 정할 것
 - iv) 생활보호이용의 한 단계 전의 단계에서 생활곤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 v) 생활보호의 보장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생활보장기준을 설정하는 것

8) 변호사 연합회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상의 제도 개선 반영을 위한 노력의 형태 등

○ (1) 중앙정부 (후생노동성) 에 대해

- 일변련 및 시민단체와도 이하의 활동을 조합해서 하고 있음
- ① 성명이나 의견서 발표(피해실태나 문제점, 법적 해석, 개선안을 기재)
- ② 기자회견이나 집회 개최
- ③ 국회의원에 대한 접촉(질문안의 작성이나 강연)

○ (2)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 아사(餓死)사건, 水際作戰(상담창구에서 거부하는 튀앙스를 비추는 것) 등의 문제가 밝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민단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조사단을 조직해서 (1)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 변호사 협회와 후생노동성과의 관계, 심의회에 변호사 협회 참여 여부

- 생활보호 심의회에 변호사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교수들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민주당 시기에만 National Income 연구(후생노동성에서 하는 포럼의 형태)의 일환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음
- 미묘한 관계임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심의회 구성이 안되는 이유가 재판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 (기타) 사회보장법으로의 통합 및 확대의 입장, 아동 및 장애인 등 대상 분리하여 확대하는 방향

- 예를 들어, 장애인 수당, 아동 수당 등이 있다면 생활보호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충성의 방향으로 생활보호제도는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
-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이 생활보호를 줄이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며, 고등학교 수업료가 높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교육수당이 있음
-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 수백만 명이 생활보호 이용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

③	일본 노인빈곤 및 생활보호제도 개선 방향, 생활보호제도와 연금제도와의 관계 등 개편 방향
일 시	11월 5일(화) 오후 3:30
장 소	교토(리츠메이칸 대학교)
참석자	원외 - 시즈메마사토 교수(리츠메이칸 대학교), 최옥금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이동진 (도시샤대학교 박사과정) 원내 - 임완섭, 이주미, 최준영

1) 일본의 노인빈곤 발생의 특성과 노인 빈곤층의 특성

- 일본 노인빈곤층 특성 : 여성 단신가구가 급격하게 증가, 여성 고령자의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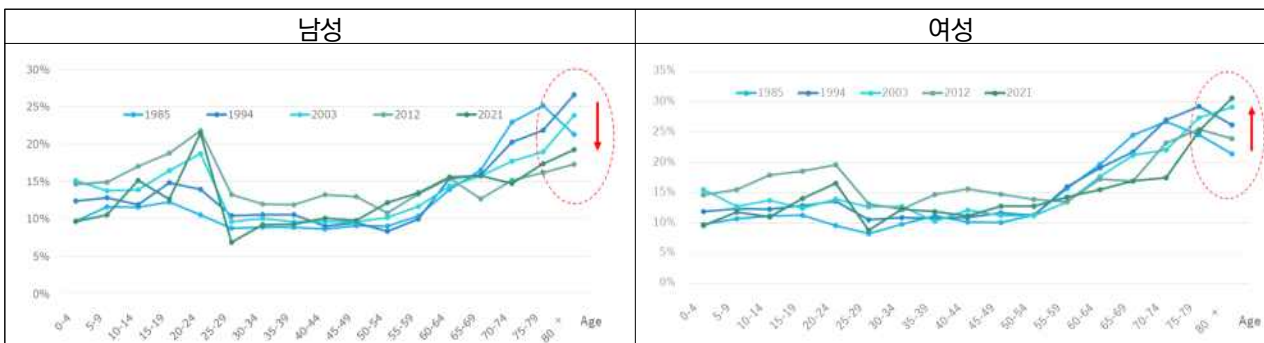
〈표〉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2021)



Note: Percentage below 50% of median equivaliz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ya Abe (2024) Relative Poverty Rate Trends: 2022 Survey Update, Retrieved from SPS22H05098, <https://www.hinkonstat.jp/>

- 남성과 여성 노령자의 비곤율 비교시 최근 여성 노령자의 빈곤율이 증가
- 각 년도마다 85-21년 21년 수치가 빈곤율이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Aya Abe (2024) Relative Poverty Rate Trends: 2022 Survey Update, Retrieved from SPS 22H05098, <https://www.hinkonstat.jp/>

○ 가구유형별 빈곤율 : 기혼, 독신, 사별, 이혼가구

- 기혼여성 고령자는 빈곤율이 떨어지는 경향, 독신여성은 높은 수치가 지속, 이혼, 사별 고령자 여성의 빈곤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금제도가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혼고령자 여성의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독신여성고령자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을 한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기존 소득활동에 대해 연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로 노동시장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족연금이 없는 점에서 미망인의 경우 연금 지급률이 낮음

<표> 65세 이상 노년층의 혼인상태별 상대적 빈곤율



Aya Abe (2024) Relative Poverty Rate Trends: 2022 Survey Update. Retrieved from SPS 22H05098. <https://www.hinkonstat.jp/>

- 남성의 경우 후생연금(厚生年金, 소득활동에 기반한 소득비례 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을, 여성의 경우는 국민연금(國民年金, 연금납입 기간에 따라 정액지급)만 받는 경향이 있음. 사별한 여성 고령자는 국민연금만 받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기존 자영자, 일시적 일자리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음

○ 기존 기혼고령자 여성에서 이혼, 사별후 여성고령자가 단신가구가 되는 경우 빈곤의 영향을 받게 됨

-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남성이 풀타임 직업을 가지는 경향, 여성은 파트타임, 혹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영향이 남아있음

- 2) 일본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무연금 문제'와 낮은 연금 수준으로 인한 '저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최저보장연금' 등이 제도화 되지 못한 이유
- 무연금자는 추정으로 100만명 정도. 보험료의 징수 강화(2014년부터 독촉이나 재산의 압류 강화) 등에 의해 감소
 - 일본의 경우 무연금문제 보다는 저연금문제가 대부분으로 더 큰 문제, 저연금 문제는 다음의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 1)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 2004년 연금개혁시 설정한 자동화장치(인구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의 영향이 후생연금보다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이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됨. 그 영향으로 기초연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짐.
 - 2) 저소득자의 면제, 감액제도의 영향으로 연금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음
 - 소득을 면제를 받는 퍼센트만큼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 연금을 40년을 납후해야 100%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최소 가입기간은 10년),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음
 - 3) 연금생활자지원급부제도는 최대액이 월액 1만엔 정도(한화 10만원 정도)로 적음 금액
 -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자의 연금액과 형평성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 연금 고갈문제 등 지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생활자지원급부제도 월액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시 최저보장연금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시 참고한 모델은 스웨덴 모델임
 - 소득비례연금에 따라 최저보장연금 금액이 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않고 연금test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
 - 당시 스웨덴 모델을 참고로 논의되었으나, 재원문제도 있었으며, 정치적 상황으로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재임선거시 여소야대가 되어서 추진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 3) 일본의 공적연금의 수급자 중 일부는 낮은 연금수준으로 인해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이 지급받음.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와 공적연금제도와와의 관계, 소득 역전 현상 등 관련 현안과 문제점과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성
- 생활부조(생계급여) 자체로는 생활이 어려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활부조만 보면 역전 현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 다만, 다른 수당, 지원제도를 합산하는 경우 역전현상이 있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급부 수준은 노후의 기초적 생활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2004년 개혁까지는, 생

활보호의 생활부조액과의 균형을 도모

- 2004년 개혁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보험료 인상하지 않고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됨. 급여수준이 자동화장치(인구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에 의해 조정되는데 인구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현상에서 기초연금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가 지속된다면 추후 생활부조 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4)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부조 기준금액을 산출할 때 가산제도(임산부, 모자, 장애인, 개호시설입소자, 재택환자, 아동양육, 개호보험료 가산 등)가 적용되는데, 노인에 대한 가산제도는 현재 없음. 그 이유는?

- 1960년대부터 노인가산(1급지 기준 18000엔 정도)이 있었으나, 폐지됨
 -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와 비교시 70세 이상의 노인의 욕구, 수준이 69세 이하 대상의 욕구와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령가산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병행이 되는 노령복지연금이 논의되면서 노령가산의 존폐에 대해 검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06년 전폐
 -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전, 세금으로 보장하는 노령복지연금이 있었음. 노령복지연금은 기존에 (소득이 낮은) 생활보호대상자였기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액과 노령복지연금을 추가하여 주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나, 형평성의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폐지
 - 노령복지연금과 기초연금은 통합되지 않았으며,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
- 모자가산(한부모가산)의 경우, 2009년 9월에 폐지되었다가 12월에 부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5) 생활부조 기준금액을 제1류비와 제2류비를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음. 제1류비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연령대 높아질수록 기준액이 낮아짐. 이러한 감액 정도의 근거는 무엇인지?

- 제1류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준액이 낮아지는 경향, 감액의 근거
 - 제1류에서는 식비, 의료비 등 개인연령별 산정이 이루어지고, 제2류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산정, 그 이후에 생활보호 수준균등화방식에서 제1류가 65%, 제2류가 35% 정도로 산출
 - 제1류에서는 식료품비 산출시 칼로리에 맞춰서 설정, 제2류는 세대인원수별 소비지출을 참고하여 산출
 -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나이가 들수록 소비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류에 대한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

6)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전반적 의견

○ 기초연금의 상향 논의에 대한 견해

-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개혁은 필요. 다만, 바람직한 수준의 논의에 이르지 않은 것은 문제
- 2025년까지 기초연금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심의회에서의 의견이 있음
 - 여기서 수준을 높이는 것은 급여액 자체를 높이는게 아닌 가입기간을 늘려서 수준을 높이는 논의로 진행
 - 보험납부 기간을 60세에서 65세(수급개시연령)로 연장하자 논의가 있는데, 이는 정년연장과 관련, 정년연장은 세대간 논의가 필요하여 아직 논의가 되고있지는 않음
- 기초연금(국민연금)이 고령기의 빈곤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고령기의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 다만, 기초연금급여만으로 최저생활을 지지하는 것은 제도의 효율성·유효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음
 - 주택 보장을 비롯한 다른 제도를 합친 정책 패키지에 의한 보장이라는 방안이 생각
- 후생연금의 수준을 낮추고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성이 필요
 - 후생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과 보수비례부분이 함께 들어있음(2호가입자). 기초연금을 높이고 보수비례부분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지금의 보험방식에서 연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제제도와 감면에 의해 보험료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반대급부로서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기초연금의 지속성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감면부분을 세금으로 보충을 해서 받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

- 현재 소득세에 대한 직접세가 낮기 때문에 간접세(소비세)가 이미 높아진 상황
- 세금을 재원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창설한다면 프랑스의 소득을 부과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목적의 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의 도입도 생각해볼 만함
 - 부과 베이스는 「가동 소득 및 대체 소득」 「자산 소득」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들 4개의 소득유형은 각각 별개로 산출되어 원천징수되지만, 과세상의 분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임
 -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로 바뀐다면 연금의 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또한 다른

지원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CSG 도입했을 때 고령자에게 징수를 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모델로 평가, 또한 사회보험의 부과상한, 부과기반, 부과 방식(정액 또는 정률), 부과대상의 제한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생활부조 중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또는 개편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7-1)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 1) 부양의무의 범위가 넓은 문제

-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강한 부양의무가 부여, 부양의무자에게는 강한 자산조사(절대적 부양의무), 3촌이내는 상대적 부양의무
- 3촌 이내 친족에게 부양의사 연락, 민폐가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연락이 간다는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음.

– 2) 자산조사 문제

- 가장 큰 문제로 저축액 5만엔 적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원칙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받을 수 없음, 살고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조사에서 제외하지만, 부동산평가액 2천만엔이 넘으면 탈락(각각의 컷오프)되는 점에서 이러한 자산조사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7-2) 제도개선, 개편 방향성

– 고령자세대 증가와 근로가능세대가 생활보호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을 때 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 적극적인 제도 이용이 과제로 생각

– 일하고자 하는 생활보호 수급자 경우에도 할로워크를 통해 직업알선 전 봉사활동, 일상생활 의욕지원향상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에서 고립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자활같은 간단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물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원이 되어야하는 경우 지자체 caseworker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 사례관리의 위탁, 연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7-3) 향후 일본 복지제도 방향성에 대한 견해

– 현행의 생활보호는 일반부조주의에 근거하는 것이며, 생활곤궁자에 대해 하나의 제도로 포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그러한 의미에서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C)에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국가가 목표로 하는 생활보호 개혁은 생활보호 수급자와 경

계선층에 있는 자에 대한 취업·자립 지원책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생활보호 수급층(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 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근로능력세대에 대한 취업지원책이 과제
- 시책으로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가 2013년에 창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
- 지자체마다 필수사업(자립상담지원사업, 주택확보급부금), (1) 직업훈련강좌, 개호복지사 양성과정 등 강좌를 들음으로써 직업훈련 과정을 수행하면 지원금(보조금)을 주는 제도, (2) 주택확보급부금의 경우 저소득세대 대상으로 기존에는 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코로나로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도 있기도 했음. 임의사업 (3) 취업준비사업, (4) 일시생활지원사업(숙박공간 마련), (5) 가계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 금전적인 문제, 소액대출지원, 금융상담 등, (6) 자녀교육지원, 지역거점 육아사업, 돌봄지원, (7) 직업훈련 - 지자체가 가능한지 행정평가도 필요, 평가인증

8) 생활보호제도 해체론에 대한 의견

※ 일본 여자 대학의 이와타 마사미(岩田正美, Masami Iwata) 명예교수는 「생활보호 해체론-안전망을 다시 짜다」라는 저서를 통해, 생활보호 해체를 통한 저소득자 대책의 재구축을 제시

○ 이와타 마사미 교수의 생활보호 해체론에 대한 견해

- UC 전 영국이나 독일의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생각, UC 전에는 영국의 제도는 카테고리별(장애, 한부모세대 등)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생각됨
- 일본의 경우 기여형 급부, 심사가 까다로운 점에서 카테고리별 지원형태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 또한 일본 기초연금은 정액방식, 영국은 소득비례 보험료(정률방식)으로 정률방식의 경우 면제가 되더라도 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음. 정액을 내고 정액을 받는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의 일본 방식에서는 UC 전의 방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 따라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새로운 방식 예를들어, 세액공제를 제도화하는 급여방식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생활보호해체론이지만 생활보호만을 다루기에는 개편의 의미가 없음.

④ 생활보호수급자 지자체 차원의 특성 및 지역 간 차이, 제도 사각지대 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일 시	11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도쿄(도쿄도 다이토구 복지사무소)
참석자	원외 - 하나지마 히로미치 계장 등(다이토구 복지사무소), 김명중 상석연구원(닛세이기초연구소), 손의섭(히토츠바시대학교 박사과정) 이지연 사무관, 오초롱 주무관(이상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내 - 임완섭, 이주미, 최준영
<p>1) 해당 지역의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또는 빈곤층의 특성</p> <p>○ 다이토구는 도쿄도 23개구 중에서 아다치구와 함께 생활보호제도 보호율이 가장 높는데(다이토구의 평균 보호율 3.45%로 도쿄도의 평균 보호율 1.95%와 전국 보호율 1.63%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 해당 지역의 보호율이 높은 이유는 크게 2가지임</p> <p>– 1) 다이토구 내 산야(山谷)지구에는 간이숙소(민간 비영리단체 운영)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전에는 일용직이 많았으나, 현재는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고령자세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의 성격도 변하고 있음 • 간이숙소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 점에서 형무소 출소, 실업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p>– 2) 다이토구의 경우, 우에노 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많고, 지방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도시(도쿄)에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지방사람들이 많이 분포, 또한 민간단체에 배식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리적인 특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토구에는 길거리 생활에서 보호가 개시되는 주소 부정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활발하던 피혁산업의 쇠퇴, 생산거점의 해외로의 이전 등 산업구조 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으며, 동경의 동쪽 지역 즉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이토구에 보호율이 높은 상황 <p>○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보호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p> <p>– 전국적 요인으로 일본의 고용정세가 좋아졌다는 점, 생활공공자지원제도 등의 다른 제도들이 활성화됨을 이유로 들 수 있음</p> <p>– 다이토구만의 특성으로는 아사쿠사에 간이숙박소가 많았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를 위한 호텔들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게 된 점,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유입으로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 시프트 현</p>	

상이 이루어짐

○ 다이토구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특성

- 다이토구의 경우 모자세대 비율 1%로 낮는데, 이는 모자세대가 살 수 있을 만한 주택물량이 별로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다이토구는 도형주택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다이토구의 경우 고령자분들이 많고,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중에 일하지 않는 세대가 86%임.
 - 소득이 있어도 수급은 가능하며, 수입인정(보족성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어 차감이 되고 지급
 - 생활보호 개시되는 이유: 저축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된 경우 47%, 상해·장애로 인한 사유 42%, 취업 수입 등의 감소·상실 5%, 기타 6%로 저축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된 경우 47%, 상해·장애로 인한 사유 42% 등이 전체의 90%를 차지
 - 보호가 해지되는 이유: 사망 45%, 실종 24%, 전출(이관) 11%, 취업개시 등 8%, 기타 12%로 사망, 실종 등이 69%를 차지고 있음
 - 다른 구와의 비교 통계 : 다이토구의 보호율은 3.45%로 1위

〈표 3-1〉 타 구와의 비교

구	세대수	피보호인원	보호율 (%)	부조비 총액 (엔,円)	각 부조의 비율 (%)				
					생활 (生活)	주택 (住宅)	간호 (介護)	의료 (医療)	기타 (その他)
총계	171,198	203,105	2.09	408,376,618,903	29.1	22.4	2.5	44.6	1.5
千代田	569	606	0.90	1,428,835,442	23.7	19.3	4.5	50.1	2.3
中央	1,100	1,218	0.71	2,768,076,968	26.3	24.2	2.5	45.1	1.9
港	1,801	2,084	0.80	4,411,218,706	27.5	23.4	2.8	44.9	1.3
신주쿠 新宿	⑧ 8,714	⑧ 9,753	⑥ 2.78	⑦ 20,786,934,375	30.5	22.3	2.3	42.8	2.1
文京	1,878	2,048	0.84	4,368,178,160	27.1	23.0	3.7	45.0	1.1
다이토 台東	⑪ 6,960	⑫ 7,427	① 3.45	⑪ 17,484,123,205	27.4	23.8	3.0	43.8	1.9
墨田	6,187	7,387	⑦ 2.68	15,179,897,140	28.6	22.2	3.5	44.0	1.7
고토 江東	⑩ 7,524	⑨ 9,067	1.71	⑩ 17,901,895,122	28.2	18.7	2.6	48.8	1.6
시나가와 品川	4,357	4,933	1.18	10,849,126,519	25.9	21.7	2.7	48.5	1.2
메구로 目黒	2,370	2,666	0.94	5,536,966,281	28.6	23.1	2.2	45.2	0.9
大田	⑤ 13,104	⑤ 15,461	2.09	④ 32,825,379,775	26.6	22.4	2.6	47.1	1.3
世田谷	⑦ 8,897	⑦ 10,152	1.08	⑧ 20,735,557,823	29.6	24.4	2.4	42.4	1.2
시부야 渋谷	2,606	2,849	1.17	6,233,275,774	29.0	21.2	3.3	44.7	1.7
中野	⑫ 6,891	⑪ 7,621	⑩ 2.22	⑫ 15,927,990,416	31.2	25.6	1.8	40.5	0.9
杉並	6,469	7,200	1.22	14,674,698,897	29.1	24.0	2.3	43.2	1.5
豊島	5,937	6,453	⑫ 2.13	14,043,041,906	28.8	23.7	2.4	43.7	1.3
北	⑨ 7,615	⑩ 9,002	⑨ 2.53	⑨ 18,190,660,849	27.5	20.1	2.5	48.4	1.4
荒川	5,004	5,820	⑧ 2.67	11,990,709,923	29.0	21.9	2.8	44.7	1.6

구	세대수	피보호인원	보호율 (%)	부조비 총액 (엔,円)	각 부조의 비율 (%)				
					생활 (生活)	주택 (住宅)	간호 (介護)	의료 (医療)	기타 (その他)
이타바시 板橋	③ 14,419	③ 17,827	③ 3.06	③ 33,723,199,146	30.1	22.9	2.1	43.4	1.5
練馬	④ 13,548	④ 16,581	⑪ 2.21	⑤ 31,589,039,289	29.9	23.7	2.3	42.7	1.5
足立	① 18,941	① 23,940	① 3.45	① 44,959,453,779	29.5	19.7	2.3	46.9	1.6
葛飾	⑥ 10,760	⑥ 13,296	④ 2.94	⑥ 25,801,867,239	30.0	21.7	2.5	44.6	1.1
江戸川	② 15,549	② 19,715	⑤ 2.86	② 36,966,492,169	30.8	23.8	2.2	41.9	1.3

주: 각 부조비의 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총 합계가 반드시 100이 되지 않는다.
 자료: 2024년 11월 7일 발표자료 p.18 번역

○ 재원 부담 : 정부부담 75%, 지자체 부담 25%

-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 다만, 다이토구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특성
 으로 도쿄도 부담이 크다는 특징을 가짐
 -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정부부담 75%, 도쿄도 부담 25%
 - 주소지가 있는 경우: 정부부담 75%, 다이토구 부담 25%

〈표 3-2〉 생활보호재원 내역

(단위: 천엔)

연도	부조비 결산액	재원내역		
		국가(정부)부담	도부담	구부담
令和元 2019년	19,739,173	14,600,554 74.0%	1,908,807 9.7%	3,229,812 16.4%
令和2 2020년	19,056,730	14,126,099 74.1%	1,872,010 9.8%	3,058,621 16.1%
令和3 2021년	18,657,329	13,837,608 74.2%	1,790,134 9.6%	3,029,587 16.2%
令和4 2022년	17,484,123	12,889,282 73.7%	1,589,895 9.1%	3,004,946 17.2%
令和5 2023년	16,885,826	12,447,376 73.7%	1,468,282 8.7%	2,970,168 17.6%

주: 천엔 미만 반올림
 국가도 부담액은 정산 후의 확정액
 법 제63조·법 제78조 반환금 등을 포함
 자료: 2024년 11월 7일 발표자료 p.19 번역

2) 해당 복지사무소의 생활보호제도 및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급여 또는 서비스의 현황 및 특성

- 사회보장은 다음의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 사회보험, 2)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3) 생활보호제도
 - 이 중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경우, 주로 대도시에 적용되는 제도, 해당 지역은 노숙인 지원 정책과 관련됨

- 도쿄도 5개 구역 내에 자립지원센터가 있고, 자립지원센터 입소 후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입소대상

- 취업의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주거지가 불안정한 경우
-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생활보호 의료부조 정책으로 대체
-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 우선입소 대상자
-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센터로 이동하게 됨
- 요코하마 지역에도 같은 정책과 시설이 있음

○ 고용보험 실업부조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활용

- 해당 사업으로 (필수사업) 자립상담지원사업, 주택(주거)확보급부금, (임의사업) 취업준비지원 (일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가계지원사업(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사업), 아동학습지원사업(중학생의 고등학교 지원을 도움을 주고 있음, 생활보호 수급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시생활지원사업

- 이 중 현금성 급여는 주택(주거)확보급부금으로 3개월 지급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3)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점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 1) 현금성 지원의 부족: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주택급부금 뿐이라 현금성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보호제도로 이동 필요

- Q) 생활곤궁자지원제도에서 생활보호제도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는지?

=>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다이토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움

- Q) 취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활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제한은 없지만, 현금의 필요성이 있다면 생활보호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함

- 2) 지역격차 존재: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으로 나뉘는데, 필수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수행하지만 임의사업의 경우 지자체마다 서비스 종류가 상이하여 임의사업에 대한 지역 격차가 존재

○ 생활곤궁자지원제도의 장점

-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이 대상이지만, 생활보호제도 대비 상대적으로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 않음

4) 빈곤층 또는 비수급빈곤층 지원의 성과 사례

○ 사각지대 발굴 관련

- 다이토구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주변 공원을 순회하며 노숙인 대상 상담을 수행
-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생위원회가 존재,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상담 후 구청으로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작동

5) 생활보호제도 및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그 외 빈곤층 대상 지원제도의 문제점(또는 현안)과 이에 대한 개선 노력 또는 개선의 방향성

- 생활보호제도 및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모두 정부 제도이므로, 정부가 상세한 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감사를 실시
- 또한 전국 일률적인 적용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제도 실시가 어려우며 지자체의 재량권은 거의 없음(가산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지원을 하지만 많지는 않음)
-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전국 유사하게 각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해야 하지만, 담당 인건비는 지자체가 100% 부담
 - 이에, 정부 제도인 점에서 인건비에 대해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함
 - 또한,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데 도쿄도의 경우는 재정 조정을 하기도 함. 3가지 조세(고정자산세, 주민세 등)를 도쿄도에서 취합하여, 이를 보호대상자 비중에 비례해서 지자체로 배분, 조세 특별수당의 개념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사례

6) 부정수급 문제

- 법 78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40% 벌금을 가산함. 과세정보를 통해 자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장 제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보호비 반납을 요구, 다만, 가산의 벌금을 적용하지는 않음

7) 생활보호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 여부

- 후생노동성과 전문가 집단(심의회)에서 5년마다 개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생활 상황과 일반가구의 생활 상황의 타당성을 검토
 -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자체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⑤	급여 적정성 평가, 표준가구, MIS 방식, 제도개편 관련 논의
일 시	11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동경(닛세이기초연구소 5층 회의실)
참석자	원외 - 김명중 상석연구원(닛세이기초연구소), 이지연 사무관, 오초롱 주무관(이상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내 - 임완섭, 이주미, 최준영
<p>1) 생활보호제도(生活保護制度)의 생활부조 기준 및 수준에 대한 검증에 있어 후생노동성과 사회보장심의회(社會保障審議會) 그리고 생활보호기준부회(生活保護基準部會)의 역할과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심의회는 후생노동대신의 자문에 응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는 단체 ○ ‘생활보호기준부회’는 생활보호기준의 정기적인 평가 및 검증을 심의하는 전문부회로 2011년 2월부터 사회보장심의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생활부조기준이 일반 저소득 가구의 소비실태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p>2) 생활부조 기준 체계에 대한 검증 작업의 주요 내용 및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부조 기준 재검토에 따른 영향액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보호대상자 조사 개별 가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7년 검정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 개정 전후의 기준액테이블에 근거해 개별가구의 가구 구성에 대응하는 기준액을 추정하고, 그 변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2019년도 검증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이와 함께 기준 재검토로 인해 금전적 혜택이 없어지는(최저생계비가 소득인정액보다 낮은 상태가 되는) 가구 수를 추계 ○ 생활보호수급가구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검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생계조사를 이용하여 검증 - 생활보호 수급가구에 대해 가구 유형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연도별 지출항목별 소비지출액 및 보호금품을 포함한 실수입액을 집계하여 그 변화를 확인 - 이와 함께 가계조사를 통해 가구유형별로 같은 기간 일반가구의 지출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집계하여 변화 추이를 비교 확인 ○ 생활보호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및 생활 의식에 미치는 영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실태 및 생활의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 2016년 및 2019년 각 년의 생활 	

보호 수급가구의 사회적 필수사항의 부족 상황을 확인하고, 일반가구의 상황과 비교.

○ 보호 개시-폐지-정지 현황 분석

- 보호대상자 조사를 통해 가구 유형별로 과거부터의 보호 개시-폐지-정지 가구 수 추이를 확인
- 사용 예정 데이터: 피보호자 조사(월별)(2012년도~2020년도)

○ 유자녀가구 부양 및 가산점 재검토에 따른 영향 분석

- 아동양육가산 및 모자 가산점 재검토에 대한 영향 분석은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 생활부조 기준에 관한 분석에서 일률적으로 실시
- 교육부조 및 고등학교 등 취학비재검토의 영향에 대해서는 2018년도 피보호자 조사의 개별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준 재검토 전후의 기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자녀 취학 상황에 따른 각 부조의 기준액을 추산하고 그 변화 상황을 파악

○ 생활부조기준의 수준 검증은 기준 설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구'가 33세, 29세, 4세 3인 가구 인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도 부부자녀 1인 가구를 모델가구로 하여 소비실태와 비교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부부자녀 1인 가구를 모델가구로 하여 검증을 실시할 예정

○ 이 비교 검증에 있어서 소비 실태를 참조하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017년 검증시 변곡점 이론을 이용한 소비의 변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부자녀 1인 가구의 생활부조기준은 소득분위 1분위를 비교대상 소득계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계속해서 부부자녀 1인 가구의 연간수입계급 소득분위 1분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단, 이 때 소비실태를 참조하는 집단 상황에 대해 생활보호기준의 개정이 간접적으로 일반 저소득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2017년 검증 시 참조한 집단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관점에서 참고할 지표에 대한 확인을 실시

○ 생활부조기준은 '표준가구'에 관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등급지,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연령계층별로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체계(편차)에 대해 지금까지 등급지, 가구원수 및 가구원 연령계층별 소비실태의 편차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실시해 왔으며, 2022년도에도 과거 검증방법에 따라 동일한 검증 실시

3) 5년 마다 실시되는 전국소비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생활부조기준의 수준 검증과 이를 포함한 생활보호기준부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검증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정책 반영 또는 제도 개선 여부(또는 반영 정도) 예: 생활부조기준, 주택부조, 동계가산의 개선 및 개정 등

○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생활보호기준부회는 2019년 실시된 전국가계구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봄부터 생활부조기준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검토 결과와 의견을 2022

년 12월 9일 '사회보장심의회 생활보호기준부회보고서'로 정리

- 재검토 작업 결과 가구 유형에 따라 생계비 기준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발생.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여당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어도 지급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생계부조 기준액이 정해졌고, 12월 23일 정부 예산안의 일부로 발표됨
- 구체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2년간(2023~24년도)은 현재의 기준액보다 지급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특례적인조치가 취해짐
- 즉, ① 새로운 기준액의 기준은 2019년 당시 저소득 가구의 소비 수준(《그림 1》의 ㉔)이지만, 여기에 1인당 월 1,000엔을 가산, ② 그룹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액(《그림 1》의 ㉓)를 밑도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액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짐
- 예를 들어, 부부 자녀 1인 가구의 3급지2(기준액이 가장 낮은 급지)를 보면, 현행 기준액이 월 12.8만 엔인 데 대해서, 저소득 가구의 소비 수준은 13.1만 엔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가족 3인분 3,000엔을 가산한 13.4만 엔을 새로운 기준액으로 설정(현행 기준액대비 4.9% 인상). 증액). 또한, 고령 가구나 청년 1인 가구의 일부(《그림 1》의 주황색 음영 처리된 가구)는 저소득 가구의 소비 수준에 1인당 1,000엔을 더해 현행 기준액을 밑돌기 때문에, 특례 조치로 현행 기준을 유지.

〈표 4-1〉 가구 유형별 생활 지원 기준액 (2023년 10월 기준)

가구 유형	급지	A) 현행 생활 지원 기준액	B) 저소득 가구의 소비 수준	A와의 비교	C) 2023년도 생활 지원 기준액	A와의 비교
부부와 자녀 1명 가구 (30대 부부와 3~5세 자녀)	1급지1	147,000엔	149,000엔	+1.2%	153,000엔	+4.2%
	3급지2	128,000엔	131,000엔	+2.5%	134,000엔	+4.9%
부부 2인 가구 (40대 부부와 중학생과 초등학생)	1급지1	178,000엔	174,000엔	-2.5%	181,000엔	+1.5%
	3급지2	141,000엔	153,000엔	+8.3%	157,000엔	+11.1%
고령 부부 가구 (75세 이상 부부)	1급지1	112,000엔	107,000엔	-4.4%	112,000엔	0.0%
	3급지2	99,000엔	96,000엔	-2.9%	99,000엔	0.0%
고령 독신 가구 (75세 이상)	1급지1	72,000엔	68,000엔	-5.9%	72,000엔	0.0%
	3급지2	62,000엔	61,000엔	+1.1%	62,000엔	+0.6%
젊은 독신 가구 (50대)	1급지1	77,000엔	75,000엔	-3.3%	77,000엔	0.0%
	3급지2	67,000엔	67,000엔	-0.3%	68,000엔	+1.2%
모자 가구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자녀)	1급지1	151,000엔	152,000엔	+0.7%	155,000엔	+3.1%
	3급지2	128,000엔	134,000엔	+4.0%	137,000엔	+6.3%

주: 음영 처리된 가구는 1인당 1,000엔의 특별 가산을 포함하여, 현행 기준액을 유지한 가구입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2023년도 예산안 개요 [참고자료]"에서 작성) 자료: 2024년 11월 8일 발표자료 p17 번역

○ 일본에서 비교 대상 가구의 소비수준이 하락할 경우 보호기준이 절대적인 수준을 밑돌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①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 되는 최저생활비 수준을 도출하려는 시도와 ②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필수항목(식료품 등 필수품 뿐만 아니라 사회참가와 관련된 지출항목도 포함함 지출항목)'에 대한 부족 상황을 조사하여 피보호가구의 '사회적 박탈' 정도를 추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생활부조기준액 개정 일부 사례

- 개정 후의 생활부조 기준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는 가구와 감소하는 가구가 있음
- 단, 2025년 3월 31일까지 임시적·특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실시
 - (1) 가구 인원 1인당 월 1,000엔을 가산
 - (2) 상기 가산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액에서 감액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액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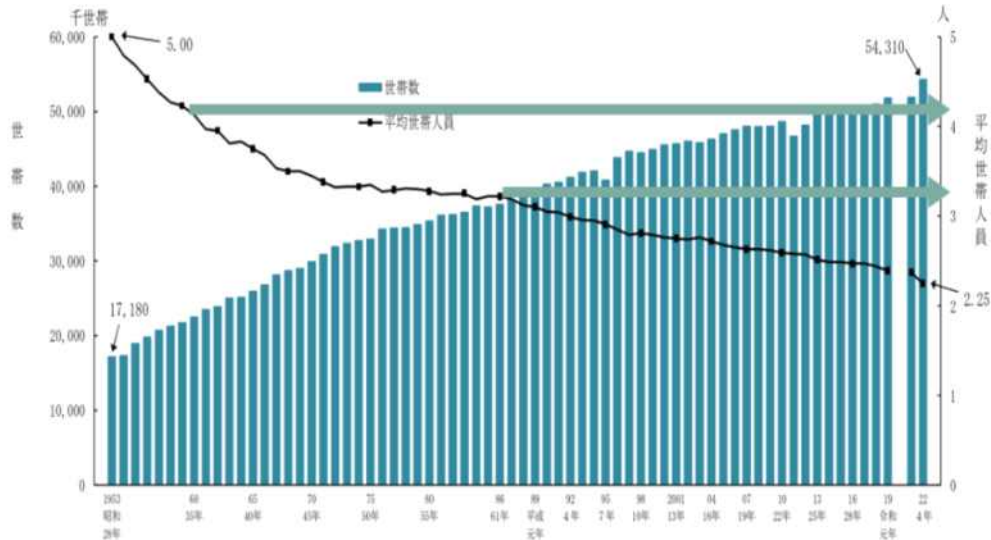
가구 구성 (가구의 연령)	개정 전 생활 지원 기준액 (2023년 9월 30일까지)	개정 후 생활 지원 기준액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부부와 자녀 1명 가구 (30대 부부, 3~5세 자녀)	146,800엔	152,900엔
고령 독신 가구 (65세)	76,880엔	76,880엔
고령 부부 가구 (65세 부부)	119,920엔	120,900엔
모자 가구 (자녀 1명) (30대 부모, 초등학교 자녀)	121,970엔	122,200엔
젊은 독신 가구 (50대)	77,240엔	77,240엔

주: 급지 구분은 "1급지-1"에 해당하며, "개정 후 생활 지원 기준액"에는 특별 가산액과 경과적 가산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 2024년 11월 8일 발표자료 p20 번역

4)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표준가구 관련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표준가구: 3인 가구가 표준가구로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음
 - '표준 가구'의 변천
 - 1950년 : '표준 5인 가구(64세 남자, 35세 여자, 9세 남자, 5세 여자, 1세 남자)' → 1950년 평균세대인원 5.00명
 - 1961년부터: '표준 4인 가구(35세 남자, 30세 여자, 9세 남자, 4세 여자)'
 - 1986년 이후: '표준 3인 가구(33세, 29세, 4세)'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표준가구의 역할
 - ① 생활부조기준을 개정할 때에 생활부조기준의 기본 축이 되는 가구로 이용.
 - ② 국민에게 생활보호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할 때에 모델로서 이용.

- 단, 생활부조기준을 설명할 때 이미 단신가구, 복수인원가구 등 표준 3인 가구 이외의 모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①의 의미가 강함.
- 가구수와 평균가구원의 추이



주: 1995년(평성 7년)의 데이터는,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것.
 2011년(헤이세이 23년)의 데이터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
 2012년(헤이세이 24년)의 데이터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
 2016년(헤이세이 28년)의 데이터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
 2020년(레이와 2년)의 데이터는, 국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단, 이미 일반가구도 단신가구가 가장 많고 피보호가구도 단신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수준 검증 대상 가구를 표준3인가구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
 - 생활부조기준 체계가 소비실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반드시 표준3인가구를 기본 축으로 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복수인원가구보다 단신가구에 주목해 생활부조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2007년 생활부조기준에 관한 검토회)
- 5) 생활보호제도의 최저생활비는 수준균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이 방식(수준균형 방식)이 적용되는 과정 또는 결과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향
- ① 표준생계비 방식(1946~47년)
 - 당시 경제안정본부가 정한 가구원수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생활부조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
 - ② 마켓 바스켓방식(market-basket system, 1948~60년)
 - 슈퍼마켓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것처럼,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별 품목

(식료품비, 의복비, 보건비 등)의 가격을 더해 기준액을 계산하는 방식.

○ ③ 앵겔방식(1961~64년)

- 영양심의회회 회신에 근거하여 영양소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을
- 이론적으로 누적하여 계산하고, 별도로 저소득층 가구 실태조사에서 이 식료품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앵겔계수의 이론값을 구하고, 이를 역산하여 총 생활비를 산출하는 방식.

○ ④ 격차 축소 방식(1965~83년)

- 일반국민의 소비수준의 증가율 이상으로 생활부조기준을 인상하여
- 결과적으로 일반국민과 피보호가구의 소비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방식

○ ⑤ 수준균형 방식(1984~현재)

- 1983년 중앙사회복지심의회가 "현재의 생활부조 기준은, 일반국민의 소비
- 실태와 균형상 거의 적정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답신해 현행 생활부조기준의 수준을 타당하다고 한다고 한데다, 일반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부조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일반가구 소비지출의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6) 생활보호제도 급여수준 산출시 체감률(遞減率) 관련

- 체감율은 가구인원이 많은 가구에 대한 보호비지급이 많아지지 않도록 1인당 지급액을 조금씩 삭감하는 계산방법

○ 가구균등화지수: 等價世帶所得(등가세대소득)

- 등가세대소득은 가구 단위로 집계한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도록 조정된 소득
- 예를 들어 단신가구의 연간수입이 800만 엔, 4인가구의 800만 엔이라고 할 때 단신가구의 소득이 4인가구의 4배라고는 말할 수 없음. 수도광열비와 내구소비재와 같이 가구내에서 공통으로 소비되는 재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구원 1인으로 보면 가구규모가 클수록 낮아지기 때문.
- 이를 고려하여 소득재분배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국제기관 통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등가소득을 계산

$$\text{등가소득} =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 이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 연간수입이 800만 엔인 단신가구와 4인가구의 가구원의

등가소득은 각각 800만 엔과 400만 엔이 됨

7) 일본에서 논의 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생활부조 중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또는 개편의 방향성

○ 수급기간의 장기화

(단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고령자 가구	3.7	4.0	16.2	15.5	26.6	34.1
모자 가구	7.8	8.3	29.6	22.4	24.7	7.2
장애인 가구	7.2	6.8	22.7	17.8	23.4	22.1
기타 가구	8.9	8.0	28.8	20.5	19.3	14.4

자료: 2024년 11월 8일 발표자료 p35 번역

○ 연금과의 밸런스

(단위: 엔)

기초적인 지출	2004년(平成16年) 전국 소비 실태 조사 보고		생활 보호비 (예: 1급지-1)				노령기초연금 월 지급액 2006년도 기준
	65세 이상 단독 세대		60~69세		70세 이상		
	남성	여성	단독세대	2인세대	단독세대	2인세대	
합계	79,000	69,833	79,600	120,410	93,760	148,730	66,008엔 (연액: 792,100엔)
식료품	38,065	31,068	(제1종)				
주거	26,163	21,511	36,170	72,340	32,400	64,800	
광열	10,335	10,365	(제2종)				
피복	4,437	6,889	43,430	48,070	43,430	48,070	
			(노령가산)				
					17,930	35,860	

자료: 2024년 11월 8일 발표자료 p36 번역

○ 부정수급 상황

- 부정 수급 건수 및 금액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
- 내용의 약 6할은 근로소득의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임

(1) 부정 수급 건수, 금액 등의 추이

연도	부정 수급 건수 (건)	금액 (천 엔)	건당 금액 (천 엔)
H23 (2011년)	35,566	17,324,498	487
H24 (2012년)	41,390	19,053,722	455
H25 (2013년)	40,091	17,294,003	431
H26 (2014년)	43,021	17,479,034	406
H27 (2015년)	42,016	16,766,619	399
H28 (2016년)	39,466	16,734,215	424
H29 (2017년)	34,407	16,200,637	471
H30 (2018년)	33,079	15,793,504	477
R1 (2019년)	32,392	16,646,971	514
R2 (2020년)	31,322	12,646,593	394

주: 위 수치는 판정 완료된 수치이며, 부정 수급액은 환수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자료: 2024년 11월 8일 발표자료 p38 번역

(2) 부정 수급의 내용

내용	2020년	
	건수	구성 비율 (%)
근로소득의 미신고	15,878	49.5
근로소득의 과소 신고	3,551	11.1
각종 연금의 이중 수급	5,678	17.7
허위 가족 추가	387	1.2
사망자의 연금 수급	1,132	3.5
상속인에 의한 허위 수급	371	1.2
소득 초과로 인한 수급 자격 미달자	5,343	16.6
합계	32,340	100

자료: 2024년 11월 8일 발표자료 p38 번역

8) 생활보호제도 수급 조건으로 자산활용, 능력활용(가동능력 稼働能力の活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규정 변화 및 내용

○ 최근 주된 개정 내용

－ 아동 빈곤에 대한 대응

- ①고졸 취업자 등에 대한 신생활 창업 비용 지급 【시행】
- ②생활보호 수급 중인 육아 가구에 대한 아웃리치사업의 임의 범정화 【2024년10월1일 시행】
- 아웃리치(방문)사업:의사, 간호사, 복지 등 전문팀이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방문형 지원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관계기관의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사업.

－ 피보호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등

- ①피보호자 취업준비지원사업, 피보호자 가계개선지원사업, 피보호자 지역거주지원사업의 임의 범정화 【2025년 4월 1일 시행】
- ② 생활보호수급자가 생활곤궁자를위한 취업준비지원사업,가계개선지원사업, 거주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행체계의 창설 【2025년 4월 1일 시행】
- ③ 취로자립급부금의산정방법 개정 【2024년 10월 1일 시행】

－ 피보호자 지원 관련 기관 등의 연계 강화 등

- ①관계기관과의 지원 조정 등을 실시하는 회의체 설치 규정(임의) 신설 【2025년 4월 1일 시행】 .

－ 의료지원의 적정 실시 등

- ① 의료부조 등에 관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의한 시정촌지원제도(노력의무) 창설 【2025년 4월 1일 시행】

- 9) 생활보호제도 가산제도(추가비용: 임신부, 모자, 장애인, 개호시설입소자, 재택환자, 아동양육, 개호보험료 가산 등)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쟁점과 검토 방향
- 대상자 자격 검증 절차, 자격 기준, 유지를 위한 재검증 절차 등
 - 타 수당과의 중첩성(아동수당의 수입 포함, 아동양육가산 등) 및 타 수당의 소득 산정(수입 포함)에 대한 쟁점이 있는지?
- 2016년 가산제도의 검증방침에 대한 기본적방향성에 대해 생활보호기준부회회의견을 제시
- “각종 가산은 생활부조기준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958년 「노령, 모자 및 장애인 가산에 대해서는 (중략) 생활부조기준 본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제안됨
 - 가산 검증 검토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점
 - 각종 가산 등이 대응하는 특별수요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우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 다음 특별수요에 대응하는 가산 등의 내용과 그 수준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
 - 유자녀 가구에 대한 부양 및 가산 방식으로서 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 교육부조, 생업부조 중 고등학교 등 취학비, 아동양육가산, 모자 가산, 임신부 가산
 - 가산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특수한 수요 파악 방법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입원환자 일용품비 · 요양시설입소자기본생활비 · 요양시설입소자가산
 - 장애인 가산, 재가환자 가산
 - 기본적으로 생활보호제도 이외의 타 수당은 수입으로 인정되어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
- 10) MIS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관련 : 접근방법, 추계방법,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 또는 정도
- 생활보호기준부회산하에 설치된 ‘생활보호기준의 새로운 검증기법 개발 등에 관한 검토회’는 생활보호기준의 재검토에 있어 보완적인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 ‘MIS기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생활보호의 ‘보조’의 수준을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준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됨.
- MIS 방식(Minimum Income Standard 법): 속성이 가까운 일반 시민들이 최저생활비에 필요한 품목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 주관적 최저생계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식비 등 지출 항목별 최소 필요 금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 두 접근 모두 추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은 생활보호를 받는 수급가구의 소비수준을 크게 상회.

이 부분만 단순하게 보면 현재의 생활보호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호기준부회논의에서는 이번 추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

– 첫째, 시산에서는 일본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액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 은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같은 생활을 상상하는 것이 아닌가고 추론.

– 둘째, 실제 일반 시민의 생활은 예산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원하는 물건이 있어도 가게 상황을 고려하여 구매를 자제하는 등)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정 결과의 취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음

– 셋째, '절대적' 최저생활수준에 대한 정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보호 수준의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따라서 이번 기준 재검토에서 위의 추정 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음.

○ MIS 방식이나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정책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생활비 전체가 아닌 식비, 오락비 등 지출항목별 최저수준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계가 절약할 때 모든 소비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은 아님. 보호대상 가구가 충족해야 할 전체 소비 수준은 일반 가구의 60~7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영유아용우유의 경우 일반 가구의 70%로는 최소한 필요한 양에 미치지 못하게 됨

○ '생활보호기준의 새로운 검증방법 개발 등 검토회'는 삶의 질을 고려한 검증을 목적으로 사회적 필수항목(식료품 등 생필품뿐만아니라 사회참여와 관련된 지출항목도 포함한 지출항목)의 부족상황을 비교 분석.

– 분석결과: 피보호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사회적 필수항목의 부족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친인척의 관혼상제 참석', '급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응', '생명보험 등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보호기준부회에서는 ' 피보호가구는 사회적 박탈 정도가 높다'는 인식을 공유

–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부족한지 가늠할 수 없고, 교제비나 교양오락비 등은 일반 가구에서도 차이가 커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필수 항목의 부족 비율 자체가 기준 재검토 작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 어떻게 하면 피보호가구의 사회적박탈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 피보호가구에 예상치 못한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일시부조'(보호

	<p>개시 시 또는 재해 시 의복비, 의무교육 입학준비금 등)의 범위에 예를 들어 관혼상제에 소요되는 축의금 및 조의금 등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이러한 '사교' 영역에 세금 투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 피보호가구에 허용되는 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국가가 명확한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녀의 학습 및 진학에 필요한 비용 등의 경우 수십만 엔 정도의 저축은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저축의 대상으로 경조사비로 대표되는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제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법. 또는 생활보호 개시 시 인정되는 저축액(현재는 최저생계비 1개월분이상의 저축이 있으면 보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늘리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음.
⑥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MIS(최저소득기준) 방법에 의한 최저생활비 계측, 생활보호제도 검증 및 평가방식
일 시	11월 8일(금) 오후 2시
장 소	동경 시내(닛세이기초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p>원외 - 아베 아야 교수(동경도립대학), 이지연 사무관, 오초롱 주무관 (이상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p> <p>원내 - 임완섭, 이주미, 최준영</p>
	<p>1) MIS(Minimum Income Standard) 최저생활비 계측 방식의 검토 배경과 조사결과, 활용 등</p> <p>○ 생활보호 기준액에 대한 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경우, 5년마다 생활보호 기준액에 대한 검증 작업을 정부(후생노동성 생활보장심의회 생활보호기준부회)에서 실시 - 검증방식: 일본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가계구조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 소득1분위(제공근 방식 활용) 지출수준과 비교하여 생계비 기준액의 변화를 반영(데이터 시차의 경우 CPI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3인가구의 5분위 중 3분위의 지출 수준과 비교하던 것에서 3분위의 수준이 높다는 지적(소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비교대상을 10분위 중 1분위로 변경됨 • 가구유형별(예를들어, 표준가구(3인 가구)) 기준으로 10분위 내 "1분위(생활보호대상자는 불포함)"의 소비수준과 생활보호기준액과 비교 • 이론적으로 비교를 통해 가구유형별 생활보호 기준액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생활보

호대상자의 급여액을 증액 혹은 감액, 다만, 2000년 이후 저분위 지출수준이 낮아져서 생활보호 급여액을 증액한 경우가 없었음

○ MIS 최저생활비 계측 방식의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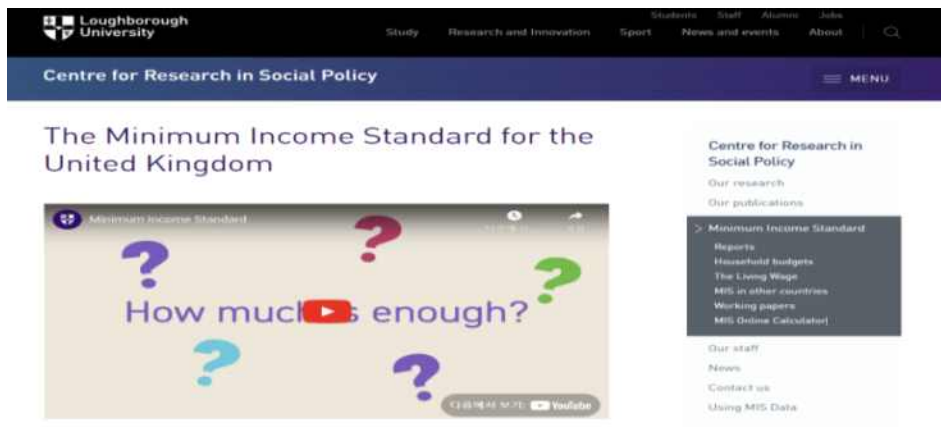
- 소득 1분위의 소득 및 지출수준 하락에 따라 생활보호기준 또한 보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됨
- 이를 배경으로 2009년 정권 교체 시기(자민당→민주당) 다양한 급여적정성 평가 방식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MIS 방식, 주관적 최저생활비 방식을 연구를 통해 수행

○ 새로운 검증방식의 정책 활용과 개선점

- MIS방식, 주관적 최저생활비 산출 결과 생활보호급여보다 상당히 높게 산출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점에서 검토로 종료
- 다만, 이동가산, 모자가구가산 등에서 부분적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

○ MIS 방식 적용시 참고 사례

- 영국(러프버러대학)의 사례
 - 러프버러대학 MIS (<https://www.lboro.ac.uk/research/crsp/minimum-income-standard/>)



- 싱가포르 MIS팀

- 정부 발주가 아닌 독자적인 연구로 연구결과 생활보호기준보다 높게 산출된 바 있음

Minimum Income Standard 2023: Household Budgets in a Time of Rising Costs

Ng Kok Hoe
Wong Yee Lok
Teo You Yenn
Neo Yu Wei
Ad Maulod
Stephanie Cho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SOCIAL
INCLUSION
PROJECT

2) 아동양육가산, 모자가산 기준액 수준 검증시 고려사항 관련

- 아동양육 가산: 고등학교 등 종료 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가산으로 교육비 관련 보조
- 모자가산: 한부모 세대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가산
 - 기존 모자가구의 지출 비용이 아동이 있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다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민당 집권시 폐지되었으나, 민주당 집권시기에 부활(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기도 함)
- 보족성 원칙(보충성 원칙)으로 아동 관련 수당 등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어 중복에 대한 쟁점은 없음

3) 생활보호제도 표준세대(3인가구, 남성33세, 여성29세, 아동4세) 설정 관련

- 1986년 기준 3인가구가 일반적인 세대형태로 표준가구를 3인가구로 설정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
- 최근 생활보호가구 중 단인가구(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인가구의 급여기준 적정성 검토 등 별도의 분석을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나,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별 차이가 발

생하는 등 유형별 계측(계산)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에서 규범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3인가구를 표준세대로 설정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 생활보장심의회 생활보호기준부회에서 생활보호기준액 설정시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5년마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급지별 지수, 연령 지수, 1,2류비 지수, 체감율 등’을 산출

4) 생활보호제도 검증·평가 관련하여 생활보호기준부회(生活保護基準部會)의 역할과 생활부조 기준 체계에 대한 검증 내용

○ 생활보호기준액 및 적정성 평가 작업을 몇 회에 걸쳐 생활보장심의회 생활보호기준부회에서 검증하고 논의(예를 들어, 주택부조 기준액 검증시 소비실태조사 등 데이터 상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택시장의 실거래가 등을 함께 비교 검토 수행)

– → 검증 및 논의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를 공개 및 발표 → 최종 결정권자는 후생노동성 대신

5) 일본에서 논의 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생활부조 중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또는 개편의 방향성

○ 수급자 비율 및 수급자 포착율이 낮은 문제

–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의 확인 범위가 큰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문제가 있음

– (개선점) 주택부조의 경우 생계지원과 별도 지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개인적인 의견)

○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령자세대 비중이 높은 점과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문제

– 연금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일본 빈곤문제 및 제도(생활보호제도,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전문가 면담



②

생활보호법 개정 및 제도개편 과정 및 이후 방향성



③

일본 노인빈곤 및 생활보호제도 개선 방향, 생활보호제도와 연금제도와의 관계 등 개편 방향



④

생활호보수급자 지자체 차원의 특성 및 지역 간 차이, 제도 사각지대 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⑤

급여 적정성 평가, 표준가구, MIS 방식, 제도개편 관련 자문



⑥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MIS(최저소득기준) 방법에 의한 최저생활비 계측, 생활보호제도 검증 및 평가방식

